



◎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공고 제2023-02호

##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정규직 공개 채용

(사)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근무할  
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자  
아래와 같이 정규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오니,  
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3년 2월 6일

붙임 :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. 끝.

#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정규직 공개 채용

## 1. 채용예정분야, 인원, 담당업무

- 가. 채용분야 : 일반 사무직
- 나. 채용인원 : 1명
- 다. 담당업무 : 일반 행정업무(국내사업 및 홍보·마케팅 업무)
- 라. 채용조건 : 정규직 [6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하여 최종 결정]

## 2. 응시자격

- 가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나.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
- 다.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라. 사업 진행시 외근 또는 지방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
- 마.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바. 채용일로부터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

## 3. 우대사항

- 가. 유관기관 및 체육단체 근무경력자
- 나. 체육관련 학과 전공 학위소지자
- 다. 콘텐츠 제작 능력 우수자(영상, 이미지)
- 라.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유경험자
- 마.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(엑셀, 한글 등)
- 바.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

## 4. 급여 및 근무

- 가. 근무처 :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 121호
- 나. 급여 : 본 협회 내규에 따름
- 다. 기타 : 본 협회 인사 규정에 따름
- 라. 복리후생 : 4대보험, 중식비지원, 주차제공, 명절상여금 제공, 여름 휴가비 제공, 출장근무 수당, 퇴직금 등

## 5. 전형절차 \* 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- 가. 서류접수 : 2023. 2. 6.(월) ~ 2023. 2. 17.(금) 17:00 까지
- 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3. 2. 20.(월) 이후
  - 면접시험 대상자 및 세부 면접 일정통지 개별 연락 예정
- 다. 면접전형 : 2023. 2. 22.(수) 예정 ※ 면접전형 일정 개별 연락 예정
- 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3. 2. 23.(목) 이후
- 마. 근무시작 : 2023. 3. 2.(목)
  -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에 퇴사, 입사포기 등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 경우 면접전형의 평가 상 위순으로 별도 채용절차 없이 합격자로 변경 가능
  - 합격 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과 근무시작일은 조율 할 수 있음

## 6. 지원방법

: 전자 우편 접수([bodybuilding@sports.or.kr](mailto:bodybuilding@sports.or.kr))

\* 메일 제목: [정규직] 입사지원서\_홍길동

## 7. 지원서 제출서류

- 입사지원서(별첨 1), 최종 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(해당자)
- 성적증명서(또는 학위수여 증명서), 자격증 사본, 공인어학성적증명서(해당자)  
: 면접시 제출

## 8. 유의사항

- 가.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나.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다.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라.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합격자 결정은 면접전형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되, 선순위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바.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 
\*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(금고 미만의 형)라도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정관 및 인사규정 등 규정의 결격사유 또는 해지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등

- 사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아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자.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사무처(02-3431-45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【응시자격요건】 “8. 유의 사항 바”항 관련 사항

【 (사)대한보디빌딩협회 인사 규정 】	【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】
<p><b>제16조(임용 결격사유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 <li>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li> <li>6. 본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7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9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10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/ul> <p>② 채용된 직원이 복무 중 위의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해임시킨다.</p>	<p><b>제33조(결격사유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</li> <li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</li> <li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6의3.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/ul>